

의약품 회수에 관한 공표

(의약품, 3등급 위해성)

약사법 제71조 및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의약품을 긴급 회수함을
공표합니다.

가. 제품명 : 스토젠정(10mg, 포장단위 500정)

나. 제조일자 또는 유효기간 : C000070, C000231(제조일자: 2022.09.01.),
C000396/T22098(제조일자: 2022.10.19.), C000397, C000398(제조일자: 2022.10.20.)

다. 제조번호 : C000070, C000231, C000396, C000397, C000398

라. 회수사유 : 재평가 결과 제제의 유용성이 인정되지 않음

마. 회수방법 : 거래처 팩스 및 공문 발송을 통한 처리

바. 회수의무자 : 아주약품(주) (대표자 김태훈)

사. 회수의무자 소재지 : 경기도 평택시 산단로121번길 23

아. 연락처 : TEL) 02-2630-0740~0741, FAX) 02-2636-7519

자. 자료작성연월일 : 2023.12.11

* 당해 의약품을 보관하고 있는 의약품의 판매업자 및 약국, 의료기관 등에서는 즉시 판매를
중지하고 회수의무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